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7.10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 7.4 조(내국민 대우)

나. 제 7.5 조(최혜국 대우)

다. 제 7.8 조(이행요건), 또는

라. 제 7.9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7.10조(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들)를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7.10조(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않

는다.

4.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4조)

이행요건(제7.8조)

유보내용

한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2018) 제4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8)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20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18)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

기준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4 조(법률 제 16479 호, 2019. 8.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 5 조(대통령령 제 30170 호, 2019. 10. 29.)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기준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3.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최혜국 대우(제 7.5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
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방위사업법

4.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최혜국 대우(제 7.5 조)
유보내용	한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 되는 중요기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의 조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5. 분야 모든 분야(인정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최혜국 대우(제 7.5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거나 인정되었어야 하는 것 외의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협정의 발효시점에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중심생산물 분류에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분류된 모든 서비스는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어야 한다.

한국은 이 협정 발효시점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았던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토지 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유보내용	<p>한국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토지 취득이 계속 허용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2.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p>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p> <p>나.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p> <p>다.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p>
기준의 조치	<p>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법률 제14569호, 2017. 2. 8.)</p> <p>농지법 제 6 조(법률 제 16652 호, 2019. 11. 26.)</p>

7. 분야

총포, 도검,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최혜국 대우(제 7.5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 분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정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 할 권리를 유보한다.

10.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 7.5 조)

유보내용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¹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라. 철도운송, 또는

마. 통신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권리는 관련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의 후속 검토 또는 개정에 따라 부여되는 차등 대우로 확대된다.

11. 분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 및 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에너지 산업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전력)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 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7.8조제1항바호(이행요건–기술 이전)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13.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가스 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 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14. 분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유보내용

한국은 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5. 분야

문화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최혜국 대우(제 7.5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재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6. 분야

주류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 7.8 조)

유보내용

한국은 주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7. 분야

모든 서비스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7.4 조)

최혜국 대우(제 7.5 조)

이행요건(제 7.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7.9 조)

유보내용

한국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장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 한다.